

## 관세청고시 제2021-61호

### 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1-57호, 2021.9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1년 10월 28일  
관 세 청 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칙<관세청고시 제2021-61호(2021.10.28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연번	고시번호(시행일)	품 명	비고
442	2021-61호('21.10.28)	SOUND BAR	
443	2021-61호('21.10.28)	1.8인치 TFT LCD	
444	2021-61호('21.10.28)	Segment LCD MODULE	
445	2021-61호('21.10.28)	ASHTRAY	

#### 442.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1-61호 (2021.10.28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○ 물품설명

-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증폭·출력하는 막대 형상의 복합형 스피커(사운드바)와 보조 스피커(서브우퍼), 조절기 등이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19.81-29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518.22-0000호

○ 변경사유

- 사운드바의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 8518.22-0000호에 분류(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 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## 443. 1.8인치 TFT LC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○ 물품설명

- 차량용 전방표시장치(HUD; Head Up Display)에 결합되어 영상 정보를 표시하는 1.8인치 TFT-LCD 모듈로, 구동(Driver) IC와 인쇄회로기판(FPCB) 등이 부착되어 있음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12.20-209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529.90-9990호

○ 변경사유

- 제시된 LCD 모듈 상태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8529.90-9990호에 분류(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 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## 444. Segmen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○ 물품설명

- 자동차 공조기(air conditioner) 제어반에 부착되어 공조기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단색 투과형(transmissive) LCD 모듈로, 23개의 전기접속자와 편광판이 결합되어 있음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12.20-2090호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31.20-1000호

○ 변경사유

- 차량 내부의 온·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시각표시반은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기기의 범주로 볼 수 없어 제8531.20-1000호에 분류(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 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## 445. ASHTR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○ 물품설명

- 차량용 컵 홀더에 끼워 거치하여 사용하도록 설계·제작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재떨이(크기 : 70mm\*110mm)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3926.30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3926.90-9000호

○ 변경사유

-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.90-9000호에 분류(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 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